

사업장 이전 등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안내

□ 수급자격 인정 요건(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, 「고용보험시행규칙」 별표2 제6호)

①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(인사발령)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,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거주지에서 사업장으로의 ②통근(왕복)에 필요한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사를 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,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정당한 퇴사 사유로 인정됨(단, 사업장의 이전 등에 따른 사업주의 통근차량의 제공, 숙소의 제공 등의 편의제공이 있었다면 이를 수용할 수 없는 ③정당한 사유가 있어야함)

※ 통상의 교통수단: 대중교통(버스·지하철·기차 등)을 말하되, 회사에서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

□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필요 준비 서류

① 사업주 확인서(사업장에서 작성)

- 사업장 이전 등의 시기 및 편의제공 여부 확인

② 사업장 이전 또는 전근으로 인한 인사발령 사실 확인 자료

- 사업장의 존재 및 이전(또는 인사발령)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- 사업장 이전 전과 후의 사업자 등록증(부동산 등기부등본, 임대차 계약서 등), 전근(인사)발령장 및 근무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근로계약서 또는 경력증명서)

③ 신청인의 주민등록 초본

- 거주지를 확인을 위함

④ 통근(왕복)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증가되었다는 자료

- 포털사이트(네이버나 다음) 길찾기(대중교통, 자동차 등 통상의 교통수단 선택, 최단 시간 인정) 화면 캡처 출력물

※문의: 부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(팩스 0508-8230-0153, 전화 032-320-8955~9)

수급자격 신청인 의견진술서

성명		생년월일	
사업장명		퇴사일자	
회사주소		회사전화번호	
담당업무			

위 본인은 사업장에서 퇴사사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자필로 의견을 작성합니다.
(※ 심사 결과에 따라 수급자격이 불인정 될 수 있습니다)

상기 내용 중 허위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 . . .

수급자격 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

※ 유의사항: 고용보험법 제108조 제3항에 따라 동 의견진술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며, 같은 법 제1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요구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또한 같은 법 제116조 제2항에 의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